

07-18146

답 변 서

- 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박효주(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 피청구인: 합동참모의장(

○ 재결청: 국방부장관

○ 심판청구서 접수일: 2007. 9. 11.

○ 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처분의 내용

가. 처분명: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처분

나. 처분일: 2006. 7. 10.

다. 처분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고지의 유무 및 내용: 고지했음

답 변 취 지

일 의 상

1. 청구인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 중 “이라크 자이툰 부대 예산의 2004년 내지 2006년 결산보고서 및 각목 명세서,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의 2004년 내지 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년 내지 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7. 6. 5. 국방부장관에게 이라크 정세 및 철군정책 관련 7개항, 자이툰부대 관련 5개항, 기타 5개항 등 총 17개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나. 같은 날, 국방부장관은 해외파병부대 관련 업무는 대부분 합동참모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합동참모본부로 이송하였고, 합동참모의장 【담당부서: 해외파병과(과장 대령 김영식)】 은 2007. 6. 21 청구인에게 일부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참조)

다. 이에 청구인이 2007. 7.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합동참모의장 【담당부서: 해외파병과(과장 대령 김영식)】 은 2007. 7. 10.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참조)

김영식

2. 피청구인 경정 신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을 '국방부장관'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보는 합동참모의장이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을 '합동참모의장'으로 경정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3. 本案前 항변

가. 청구취지의 불명확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는 너무 불명확하여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에서는 청구원인에 기재된 10개 항목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나. 공개한 정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가. 이라크 자이툰부대 예산의 2004년 내지 2006년 결산보고서 및 각목 명세서, 나. 자이툰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다.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년 내지 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라.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년 내지 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미 2007. 6. 21 청구인에게 공개를 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참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추가공개

그리고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재차 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개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2007. 9. 20. 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도 그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을 제3호증 참조)

4.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

가. 청구인은 이라크·아프간 정세 및 파병정책보고서 등 10개 항목은 당연히 국민에게 밝혀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합동참모의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함)이 정보공개법 제9조를 적용하여 이를 일부 비공개 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합니다.

나.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 중

- (1) '국방연구원의 보고서 내용',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평가 보고서', '이라크 정세 및 자이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등과 관련한 회의 목록 및 회의록 일체'는,

파병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되었을 경우 국가의 파병정책 결정 및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 '쿠르드와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전망 보고서 목록과 그 내용 일체'는,

이라크에서 자이툰부대가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급작스런 우발상황 발생 시 한국 정부·국방부에서 이라크, 터키, 이란 등 對 주변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치방안을 검토한 국제적으로 민감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었을 경우 외교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 '자이툰 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은,

군사대외비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외부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들은 파병정책 결정, 또는 파병부대의 안전 및 미국, 이라크, 터키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등에 대한 민감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개된다면 파병부대원의 안전이나 외교관계에 있어서 심히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심사숙고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국방연구원의 보고서 내용' 등 5개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증 거 서 류

임의상

1. 을 제1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7. 6. 5. 발송) 1부
1. 을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7. 7. 10. 발송) 1부
1. 을 제3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7. 9. 20. 발송) 1부

2007. 9. 21.

피청구인 합동참모의장

(작전본부 해외파병과)

국방부장관 귀중

<을 제1호증>

우 140-701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748-3452) /전송(796-7985) /해외파병과 /조주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해외파병과-

수 신 : 박효주 귀하

접 수 일 자	2007. 6. 5	접 수 번 호	340248
청 구 정 보 내 용	< 이라크 철군 및 철군정책 관련> 1. 국방연구원이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2.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이라크 정세 및 철군조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준 리스트와 내용일체 3.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 평가보고서 목록과 내용일체 4.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5.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에 대한 정세분석 및 관련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6. 쿠르드 - 이라크의 관계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7. 미국측에서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관련하여 요청한 내용 일체 < 자이툰부대 관련> 1. 자이툰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2.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3.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등 4. 이라크 자이툰부대내의 설치된 이라크 지역재건팀(PRT)의 참여현황과 주요활동에 대한 기록일체 5. 오종수 중위 사고일지		

접 수 일 자	2007. 6. 5	접 수 번 호	340248
청 구 정 보 내 용	< 기 타 > 1.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2.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등 3.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년 - 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등 4. 아프간 지역 재건팀(PRT) 참여현황 및 주요업무 내용 일체 5. 미국측에서 요구한 다산 동의부대 파병연장 요청한 내용 일체		
공 개 내 용	< 이라크 철군 및 철군정책 관련 > 1. 국방연구원이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가 <u>곤란함</u> 2.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이라크 정세 및 철군조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준 리스트와 내용일체 가. 연구용역을 준 <u>사실이 없음</u> 3.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일체 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u>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공개가 곤란함</u> 4.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u>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공개가 곤란함</u>		

접 수 일 자	2007. 6. 5	접 수 번 호	340248
공 개 내 용	5.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에 대한 정세분석 및 관련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가. 정세분석 내용 1) '05. 10월 이후 '아르빌' 지역內 테러가 없다가 금년 5월 초 2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나, 쿠르드 지방정부(KRG)의 쿠르드 지역 주민 대상 '대테러 협조 성명서' 발표, 적대세력 소탕 작전본부 설치 등 민첩한 대응으로 치안유지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쿠르드 지방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발전소·국제공항·방송시설 등 기간시설 건설에 주력하며,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쿠르드족 위상 강화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향후 쿠르드족 위상 강화를 반대하는 불만세력의 위협은 지속 되겠으나, 강력한 치안 활동과 경제재건 노력으로 아르빌 지역 정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평가됨 나. 정세분석과 관련하여 보고서 목록은 별도로 없음 6. <u>쿠르드 - 이라크의 관계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u> 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u>공개가 곤란함</u> 7. 미국측에서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관련하여 요청한 내용 일체 가. 공식문서 요청 없음 <자이툰부대 관련> 1. <u>자이툰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u> 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u>공개가 곤란함</u>		

접 수 일 자	2007. 6. 5	접 수 번 호	340248
---------	------------	---------	--------

공 개 내 용

2. 이라크 자이툰부대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인건비	313	936	761
급식	56	146	90
피복	57	39	13
부대활동지원	414	317	288
장비운영	96	53	36
물자획득	58	21	14
시설건설	332	0	0
장비획득 및 유지	481	187	44
계	1,807	1,699	1,246

※ 상기 예산은 자이툰사단, 다이만부대 예산을 합한 수치임

3.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등
단위 : 억원

구 분		'06
계	사업 수	16
	금액	93.52
친화활동	사업 수	6
	금액	6.29
인도적 지원	사업 수	2
	금액	8.58
치안유지 지원	사업 수	1
	금액	19.43
사회 경제개발 지원	사업 수	7
	금액	59.22

4. 이라크 자이툰부대내 설치된 이라크 지역재건팀(PRT)의 참여현황과
주요활동에 대한 기록일체

가. 지역재건팀 참여현황 : 국방부의 참여인원은 2명으로
부팀장과 자이툰부대 연락장교임

나. 주요활동에 대한 기록

1) 아르빌 지역재건팀은 외교부 주관 하 운용하는 것으로서
'07. 2.1일 출범식을 하여 현재 정상 운용을 위한 준비 중에 있음

2) 아르빌 RRT는 외교부 주도로 운영되는 바 주요활동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국방부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외교부로 문의 바람

접 수 일 자	2007. 6. 5	접 수 번 호	340248
공 개 내 용	5. 오종수 중위 사고일지 ○ 5. 19(토) 13:45 (한국시간 18:45)경 자이툰 의무근무대 이발소에서 오종수 중위가 K-2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을 의무대 행정병이 발견 • 현장 수사본부 설치, 현장보존 및 사고조사 ○ 5. 19(토) 19:20경 자이툰사단 최초보고 접수 및 상황대책회의 개최 • 유가족, 국방부 조사팀, 유해인수단 현지 파견 지시 • 사망자 유가족에게 사망사실 통보 및 상황 설명 ○ 5. 20(일) 유가족, 유해인수단, 조사단(국방부 수사관, 총기감식관, 사진 전문가 등) 현지 급파하여 5. 21(월)~22(화)까지 유족대표 참석하 사고현장 방문/감식, 총성실험 등 사고조사 * 유가족에게 사고현장 상황 및 사고경위 설명 및 VTR 시청(현병대장) ○ 5. 23(수)~24(목) 유해운송, 국내도착 후 수도병원 안치 ○ 5. 26(토) 09:30부터 유가족 대표 2명, 국방부 검찰관, 수사관 9명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소속 민간 의사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박사 집도로 부검 실시 * 타살로 연관 지을 수 없는 접사에 의한 두부 관통총창사로 판명 ○ 5. 30(수)~6. 1(금)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총기·탄피·탄창에 대한 정밀감식 및 지문검사, 현장에서 채취한 조직·모발·오종위의 혈액을 국립과학연구소에 DNA 감정의뢰 * 감식결과 실탄은 오종위의 총에서 발사되었으며 모두 오종위의 유전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 ○ 6. 4(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 발표(사전 부모 동의) ※ 현재 故 오종수 중위의 유해는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유가족들은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순직처리와 국립묘지 안장, 부대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장례일정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기 타> 1.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공개가 곤란함		

접 수 일 자	2007. 3. 2	접 수 번 호	297331																																																		
공 개 내 용	2. 쿠웨이트 주둔 다이하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등 가. 4쪽. 2항 참조바람 3. 아프간 주둔 다산동일부대의 2002년 - 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등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02</th><th>'03</th><th>'04</th><th>'05</th><th>'06</th></tr> </thead> <tbody> <tr> <td>인건비</td><td>20</td><td>56</td><td>58</td><td>58</td><td>42</td></tr> <tr> <td>급식</td><td>3</td><td>12</td><td>7</td><td>5</td><td>13</td></tr> <tr> <td>피복</td><td>5</td><td>4</td><td>4</td><td>2</td><td>2</td></tr> <tr> <td>부대활동지원</td><td>13</td><td>40</td><td>42</td><td>27</td><td>30</td></tr> <tr> <td>장비운영</td><td>3</td><td>1</td><td>2</td><td>13</td><td>7</td></tr> <tr> <td>물자획득</td><td>11</td><td>6</td><td>8</td><td>8</td><td>7</td></tr> <tr> <td>계</td><td>55</td><td>119</td><td>121</td><td>113</td><td>101</td></tr> </tbody> </table>					구분	'02	'03	'04	'05	'06	인건비	20	56	58	58	42	급식	3	12	7	5	13	피복	5	4	4	2	2	부대활동지원	13	40	42	27	30	장비운영	3	1	2	13	7	물자획득	11	6	8	8	7	계	55	119	121	113	101
	구분	'02	'03	'04	'05	'06																																															
	인건비	20	56	58	58	42																																															
	급식	3	12	7	5	13																																															
	피복	5	4	4	2	2																																															
부대활동지원	13	40	42	27	30																																																
장비운영	3	1	2	13	7																																																
물자획득	11	6	8	8	7																																																
계	55	119	121	113	101																																																
	4. 아프간 지역 재건팀(PRT) 참여현황 및 주요 업무내용 일체 가. PRT는 전후복구를 위해 구성된 다국적·다기능 민사팀으로 지방재건과 치안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정화 군사작전을 지원 나. '03. 3월 미 중부사 요청으로 국방부에서 '03. 8월 최초 10명 파병 다. 현재 8명이 美 바그람 PRT에 편성되어 공사감독·지도, 지역 개발 회의 참석 및 재건소요 파악, 구호·의료지원, 현지 업체 대상 기능공 교육 등 활동을 수행 중에 있음																																																				
	5. 미국측에서 요구한 다산·동일부대 파병연장을 요청한 내용 일체 가. 공식문서로 요청받은 것은 없음																																																				
비공개 사유 (전부 또는 일부)																																																					
공 개 방 법	직접공개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우송공개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공 개 일 시	2007. 6.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편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7년 6월 21일 (기관장) 대령 김 영 식 (인)																																																					

<을 제2호증>

우 140-701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748-3452) /전송(796-7985) /해외파병과 /조주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해외파병과-

수 신 : 박효주 귀하

접 수 일 자	2007. 7. 3	접 수 번 호	340248
청 구 정 보 내 용	1. 정보공개법 제 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근거와 기준 2. 국방연구원이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3.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전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4. 쿠르드 - 이라크의 관계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5. 자이툰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6.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7.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등 8.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전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9.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등 10.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년 - 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등		

접 수 일 자	2007. 6. 5	접 수 번 호	340248
공 개 내 용	1. 미 공개내용이 정보공개법 제 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근거와 기준 가. 귀하께서 6. 5일 요청하신 내용 중 국방부에서 정보공개법 제 9조에 의거 미 공개한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임. 나. 참고로 아래사항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1) 업무의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2)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료 3)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2~10 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6. 21일 보내드린 내용과 동일함.		
비공개 사유 (전부 또는 일부)			
공 개 방 법	직접공개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우송공개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공 개 일 시	2007. 7. 10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편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기관장) 대령 김 영 식 (인)			

<을 제3호증>

우 140-701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748-3452) /전송(796-7985) /해외파병과 /조주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해외파병과-

수 신 : 박효주 귀하

접 수 일 자	2007. 9. 11	접 수 번 호	340248
공 개 내 용	귀하께서 2007년 6월 5일(행정정보공개청구) 및 9월 11일(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요구하신 “국방부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에 대한 공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다산 및 동의부대는 국회파병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대로 2007년 12월 중 국내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나. 철수는 병력, 장비 및 물자 모두 전세항공기를 이용하여 철수할 예정이며, 세부철수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철수 추진일정은 다산 및 동의부대 임무종결시기, 철수 물동량 및 준비 소요기간, 현지 부대장의 의견, 아프간 정부의 입장과 미국 등 아프간에 병력을 파병한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철수 추진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사유 (전부 또는 일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정보공개 요구사항 중 상기 건 외 기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추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공 개 방 법	직접공개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우송공개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공 개 일 시	2007. 9. 20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편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7년 9월 20일 (기관장) 합 동 참 모 의 장 (인) (작전본부 해외파병과)			